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61531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615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1547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변론 종결 2018. 3. 28.

판결 선고 2018. 4.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1547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9,981원과 그 중 124,634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842,5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229,690원과 그 중 24,995,89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6. 11.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5. 5. 11., 이율을 월 3%, 이자 지급시기를 매월 11일로 약정하였고, 같은 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일금 오백만원을 지불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는 2005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05. 3. 10.	5,000,000원	2006. 2. 10.	월 3%	매월 10일	2005. 3. 10.	C
2	2005. 4. 20.	10,000,000원	2005. 7. 20.	월 3%	매월 20일	2005. 4. 20.	C
3	2005. 4. 22.	5,000,000원	2005. 12. 22.	월 3%	매월 22일	2005. 4. 22.	C

라.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피고가 지불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7. 12.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이자로 150,000원을 변제하였고,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1	2004. 8. 9.	150,000원
2	2004. 9. 10.	150,000원
3	2004. 11. 12.	150,000원
4	2004. 12. 13.	150,000원
5	2005. 4. 12.	80,000원
6	2005. 4. 12.	150,000원
7	2005. 6. 10.	150,000원
8	2005. 7. 19.	150,000원
9	2005. 7. 26.	500,000원
10	2005. 8. 25.	450,000원
11	2005. 9. 10.	150,000원
12	2005. 11. 15.	300,000원
13	2015. 7. 14.	40,000원
14	2015. 7. 16.	20,000원
15	2015. 7. 27.	3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4. 6. 11. 5,000,000원, 2005. 3. 10. 5,000,000원, 2005. 4. 20. 10,000,000원, 2005. 4. 22.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전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2007. 7. 21.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C에게 2004. 6. 11. 5,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 다른 금원을 대여한 일이 없고, 피고는 C의 2004. 6. 11.자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다. C의 2005. 3. 10.자 차용증은 원고의 D에 대한 2005. 3. 10.자 대여금 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요구로 임시로 작성한 것으로서 장차 원고가 D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으면 위 차용증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4. 20.자 차용증은 원고가 C에게 '종전의 차용증들을 분실하였으니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005. 4. 22.자 차용증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재작성 요구에 따라 각각 실제 금원 대여 없이 재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피고의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의 지불각서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004. 6. 11.자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로서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C의 2004. 6. 11.자 차용금 채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나) 설령 피고에게 C의 차용증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 작성된 차용증 3장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C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권이 있고, 피고는 민법 제435조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한다.

나. 판단

1) 2005년 작성 차용증 기재 금원의 실제 대여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 4장의 차용일과 차용금액, 변제기와 이자 지급시기가 전부 다르고, C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자를 변제한 일자도 다양한 점, C는 각 차용증에 차용인을 C 자신으로 기재한 점, 2005년의 차용증 3장은 작성일자가 서로 가까워 재작성의 동기를 수증하기 어려운 반면, C는 그 무렵 D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에 관한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2005. 4. 12., 2005. 8. 25. 변제한 이자는 D에 의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2005년에 타인을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은 채 기존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재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C가

원고로부터 2004. 6. 11. 5,000,000원, 2005. 3. 10. 5,000,000원, 2005. 4. 20.

10,000,000원, 2005. 4. 22. 5,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2004. 6. 11.자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C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C의 2005. 3. 10.자 차용금 5,000,000원, 2005. 4. 20.자 차용금 10,000,000원, 2005. 4. 22.자 차용금 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금원 대여 이전에 C가 원고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계약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명확히 특정될 것을 요하는데, 갑 제2, 4,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C의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충당 피고와 C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C의 4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6%, 2007. 6.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7. 21.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제한최고이자율인 연 30%, 2007. 7. 22.부터 변제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충당한 결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피고가 보증한 채무와 나머지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이 같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2014. 6. 11.자 차용원리금 합계

19,012,791원(=4,995,888+14,016,903)과 그 중 원금 4,995,888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2,399,981원(=19,012,791-16,612,810)과 그 중 124,634원(=4,995,888-4,871,254)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정지선

판사한재상

별지